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3. 10. 17.(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미자 의원 외 11명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안미자의원 외 11명
- 제안일 : 2023. 10. 6.
- 회부일 : 2023. 10. 10. (의안번호 : 23-128)

2. 제안이유

마포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2조)
 - 제56사단 제218여단 제1대대 예비군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부대장 운행차량”을 지원하고자 함.
-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안 제3조)
 - 예비군대원들의 입소편의를 위하여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지원신

청이 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예비군법」 제14조의3,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 입법예고: 2023. 8. 17. ~ 8. 21. 결과: 의견 없음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5.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안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마포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제정 취지(적정성/타당성)
본 제정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라 마포구 거주 예비군 동원 훈련 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의 지원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

- 서울시 10개 자치구 제정 시행 중

(2023.10. 현재)

자치구명	제정일	자치구명	제정일
강남구	2023. 7. 7.	서초구	2023. 9. 22.
광진구	2023. 7. 28.	성동구	2023. 9. 21.
동대문구	2023. 8. 10.	송파구	2023. 9. 14.
동작구	2023. 9. 27.	양천구	2023. 3. 9.
서대문구	2023. 8. 2.	중랑구	2023. 10. 5.

○ 소요예산

- 연 137,700천원(전액 구비)

차량소요 306대 x 450천원 = 137,700천원

- 연간 훈련일수: 51일
- 훈련 연인원: 18,111명 / 1일 평균 훈련인원: 355명(18,111명/51일)
- 차량 탑승인원: 213명(355명 x 60%) ※ 자차 이용인원 제외
- 일일평균 배차: 6대 / 연간 배차소요: 306대(6대x51일)

○ 조항별 구성 및 내용

가. 안 제1조에는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임.

나. 안 제2조에는 마포구에 거주하여 소집통지서를 받은 구민과 훈련장을 관장하는 부대 제56사단 제218여단 제1대대 예비군 훈련장(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3-1)까지 차량을 지원하는 임시차량에 관하여 용어를 정의한 내용임.

다. 안 제3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 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임.

6. 종합 검토의견

-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4호에서는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을, 제5호에서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제5조 별표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 제4

호가목에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본 사업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는 기존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1억 4,340만원을 편성하여 예비군 육성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국방부령의 사업범위에 예비군 훈련장 차량지원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지원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 조례의 근거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원할 경우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 없는 예산지원이 되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예비군법」 등 관련 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예비군 훈련 입소 예비군에게 현재 출·퇴근 명목의 교통비 8,000원이 국방부로부터 지급되고 있어 이와 별도로 해당 군부대에서 예비군을 위한 훈련장 입소차량을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입소차량 운행이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어 입소차량 이용을 위해 특정 지역까지의 도착을 위한 부수적인 교통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택시 이용의 경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현재 택시 기본거리 1.6km 기본료 4,800원), 자가차량 이용시 유류비 지원의 몫으로 일부 충당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예

비군 훈련 교통지원의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중복지원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마포구에 거주하는 예비군훈련 대상자인 청년과 직장인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편익을 증진하고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임.

- 다만, 현재 본 사업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는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비군 훈련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정확한 예산을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별표 1] 관계 법령

「예비군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82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 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 2023. 6. 14.] [대통령령 제33500호, 2023. 6. 7., 일부개정]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제4조(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11. 30.>

1.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2. 각급 국가기관의 장: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지원과 산하의 기관·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
4.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예비군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직장예비군부대 안의 모든 직장의 장]: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전문개정 2014. 1. 16.]

제5조(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 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1. 16.]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6. 11. 30.>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

가.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의 지원

- 1) 관할구역 안에서 작전 중인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의 지원
- 2) 차량·선박의 확보와 인원·물자 수송의 지원
- 3) 지역방위작전용 간이 통신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원
- 4) 구급약품 확보의 지원
- 5) 개인 장구류 등 장비·물자 확보 및 유지

나. 전투시설의 지원

- 1) 진지구축 자재·도구의 확보 및 유지의 지원
- 2) 무기고·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창고 설치 및 유지

3) 관측소 및 검문소용 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가. 예비군 후생·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 나.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격려
-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